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

우)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 ☎ 530-2051 / 팩스 592-5661 / 주심: 오병희 판사

시행일자 2013. 10. 22.

수신처 수신처 참조

제목 관계인집회기일 및 변경회생계획안 요지 통지

- 채무자 범양건영 주식회사(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4-8, 관리인 정태화)에 대한 이 법원 2012회합103호 회생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82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고, 아울러 같은 법 제232조에 의하여 회생 계획변경계획안의 요지를 통지합니다.

다음

가. 일시 : 2013. 11. 8. 10:00

나.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

다. 회생계획변경계획안 주요 내용 : 별지 회생계획변경계획안 요지와 같다.

재판장 판사 이종석



수신처 : 관리인, 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끝.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 채권자

< 분할존속회사(A사) >

1. 회생담보권

가. 구상채무

- (1) 확정채권액 : 전액 현금변제
- (2) 변경인가 후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나. 대여채무

- (1) 확정채권액 : 전액 현금변제
- (2) 변경인가 후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2. 회생채권

가. 구상채무, 대여채무, 보증채무

확정채권액의 4.74091956%(이후 4.7%로 청함)는 현금변제, 미변제 잔액 및 개시후이자는 전액 출자전환

나. 대여채무(우선변제)

신한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9,497,607,867원, 신한캐피탈의 확정채권 중 197,269,456원은 B사로 이전하고, B사로 이전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함. B사로 이전하는 채권을 제외한 확정채권액의 5.65293695%(이하 5.6%로 청함)는 현금변제, 미변제 잔액 및 개시후이자는 전액 출자전환

다. 상거래채무, 신주인수권부사채(공모, 사모)

확정채권액의 5.6%는 현금변제, 미변제 잔액 및 개시후이자는 전액 출자전환

라. 신탁대여채무

신한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32,297,900,833원, 우리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9,953,121,869원, 중소기업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8,889,999,007원, 하나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5,216,052,330원은 B사로 이전하고, B사로 이전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함. B사로 이전하는 채권을 제외한 확정채권액의 5.6%는 현금변제, 미변제 잔액 및 개시후이자는 전액 출자전환

마. 미확정 구상채무

보증인 등이 적법하게 대위변제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될 경우 대위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원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의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권리변경한 후의 현금변제할 금액의 4.7%는 현금변제, 미변제 잔액 및 개시후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함. 다만, 변경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금액이 미확정이므로 예상변제재원을 Escrow 계좌에 유보하여 관리함

바. 미확정 보증채무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은 원회생계획에서 정하는 회생채권 미확정보증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현금변제하기오 한 금액의 4.7%를 현금변제, 미변제 잔액 및 개시후이자는 전액 출자전환

사. 임대보증금채무

- (i)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임차목적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령하는 임차보증금에서 미수임대료 및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변제해되,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미수임대료 및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전액 현금변제
- (ii)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시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서 미수임대료 및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변제
- (iii) 임차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매수인이 미인수시 매각대금으로 변제함. 매각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미변제 임차보증금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미수임대료 및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전액 현금변제

아. 조세 : 전액 현금변제

3. 공의채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변제

< 분할신설회사(B사) >

1. 회생담보권

해당 없음

2. 회생채권

가. 대여채무(우선변제)

- (1) 하자노바 현장 관련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의 채권은 우선 PARASAT GROUP LLP로부터 변제받거나, 또는 그 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목적물과 당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처분 등으로 환가된 금액에서 관련 공의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변제함
- (2) 프레체 현장 관련 신한은행의 채권은 우선 PUMYANG Descon LLP로부터 변제받거나, 또는 그 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목적물과 당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처분 등으로 환가된 금액에서 관련 공의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변제함

나. 신탁대여채무

- (1) 오네르 현장 관련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은 우선 STED-JIPS Development LLP로부터 변제받거나, 또는 그 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목적물과 당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처분 등으로 환가된 금액에서 관련 공의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변제함
- (2) 빈幡 현장 관련 우리은행의 채권은 우선 주식회사 리엔코베트남빈幡으로부터 변제받거나, 또는 그 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목적물과 당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처분 등으로 환가된 금액에서 관련 공의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변제함

3. 공의채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변제

○ 주주

1. 분할존속회사

-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 분할전 회사의 보통주 1주 액면 5,000원의 주식을 5,000원에
발행(총 11,627,652주)
- 분할존속법인의 출자전환주식 등을 14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감자
- 재병합 후 주식 1주당 0.38165037주의 비율로 병합하여 감자
- 분할존속법인에서 1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30만 주를 제3자(PCM 컨소시엄) 배정 방
식으로 유상증자(자본금 115억 원 증가)

2. 분할신설회사

- 분할존속회사 주주에게 분할존속회사의 위와 같은 주식 14:1 재병합 감자 후의 보유주식
1주당 0.61834936주 배정(총 554,787주, 자본금 2,773,935,000원)

■ 회사분할

1. 개요

신탁자산과 해외 PF 사업장 관련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법인(B사)로 이전하여 B사로 하여금
회생기간 동안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분할존속법인(A사)는 건설사업을 계속
하되 인가 후 M&A를 통하여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으로 납입된 자금으로 채무를 일시 변
제하여 조기 종결을 추진함

2. 분할신설법인의 설립

분할 전 회사의 출자전환 및 감자 후의 주식(총 897,206주) 1주당 0.61834963주 비율로 분
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자본 총액 2,773,935,000원(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554,787주)의 B사를 설립

3. 분할신설법인으로의 자산, 부채의 이전

가. 자산의 이전

(1) 유동자산

현금 7억 원 → 분할신설법인 운영자금 용도
단기대여금 및 기타수취채권 436.72억 원

(2) 비유동자산

종속기업투자자산 5백만원
관계기업투자 및 조인트벤처 15.36억 원
유형자산 191.81억 원
투자부동산 251.72억 원

나. 부채의 이전

분할신설회사(B사)로 이전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이전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매
각예정가액 내지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 상당액의 채무를 이전함. 다만, 분할존속회사에 잔
존하는 채권의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해당 자산의 매각예정가
액 또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금액을 이전함

<끝>